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23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3월 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지번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2	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47-8	2020. 3. 4	건물 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
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
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24호

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-2지구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298호(2003.10.10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34호(2019.10.04.)로 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된 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-2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3월 4일
중 구 청 장

1. 정비구역 지정(변경없음)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

나. 정비구역 지정 조서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기정	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중구 순화동 1-24 일대	15,092.8	서울시 고시 제2003-298호 ('03.10.10)

다. 지구지정 조서

구분	지구명	위 치	시행면적(㎡)	구 분		비고
				획지(㎡)	정비기반시설(㎡)	
기정	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-2지구	중구 순화동 5-1 일대	1,979.9	1,637.2	342.7	-

※ 추가 기반시설 부담(토지환산면적 228.2㎡)은 지상2층부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하며, 정비기반시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

-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확정

2. 정비계획 결정(변경)

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구분	명칭	면적(㎡)	비율(%)	비고
합 계		1,979.9	100.0	-
정 비 기 반 시 설	소 계	342.7	17.3	-
	공공공지	334.4	16.9	-
	도 로	8.3	0.4	-
택 지 (획 지)	소 계	1,637.2	82.7	-
	대 지	1,637.2	82.7	-

※ 추가 기반시설 부담(토지환산면적 228.2㎡)은 지상2층부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하며, 정비기반시설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

-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확정

나. 용도지역·지구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1) 용도지역

구 분	면적(㎡)	비율(%)	비 고
계	1,979.9	100.0	-
준주거지역	1,656.9	83.7	-
일반상업지역	323.0	16.3	-

2) 용도지구(해당없음)

다. 정비기반시설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라. 건축시설계획(변경)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층수 (지상/지하)	비고
	명 칭	면 적 (㎡)	명 칭	면 적 (㎡)							
기정	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-2지구	1,979.9	-	1,637.2	순화동 5-1일대	업무	60이하	625이하	70이하	15/5이하	-
변경	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-2지구	1,979.9	-	1,637.2	순화동 5-1일대	업무	60이하	625이하	70이하	-	-

- 용적률 : 625.0%이하 적용
- ① 기준용적률 : 359.2%, 용도지역 가중평균(준주거+일반상업)
- ② 허용용적률 : 85.4%

건축물 용적률
완화에 관한 계획

목 적	인센티브 완화 요건	산정방식	완화량
친환경개발	녹색건축물 인증(그린 2등급)	기준등급 준수시 허용용적률 총량의1/2부여	50%
	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(260(kWh/㎡·y)이하)		
	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(10%이상)		
역사보전	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(시설물 포함) 및 지역 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시공간유치 등 위원회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	정률부여	5.4%
보행가로 활성화	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	정량부여	30.0%

- ③ 상한용적률 : 180.8%

구 분	인센티브 산식	적용내용	완화량
토지(도로, 공공공지) 및 건축물 부담	허용용적률×1.3×α (α=부담면적/대지면적)	444.6%×1.3×0.3128	180.8%
계		-	180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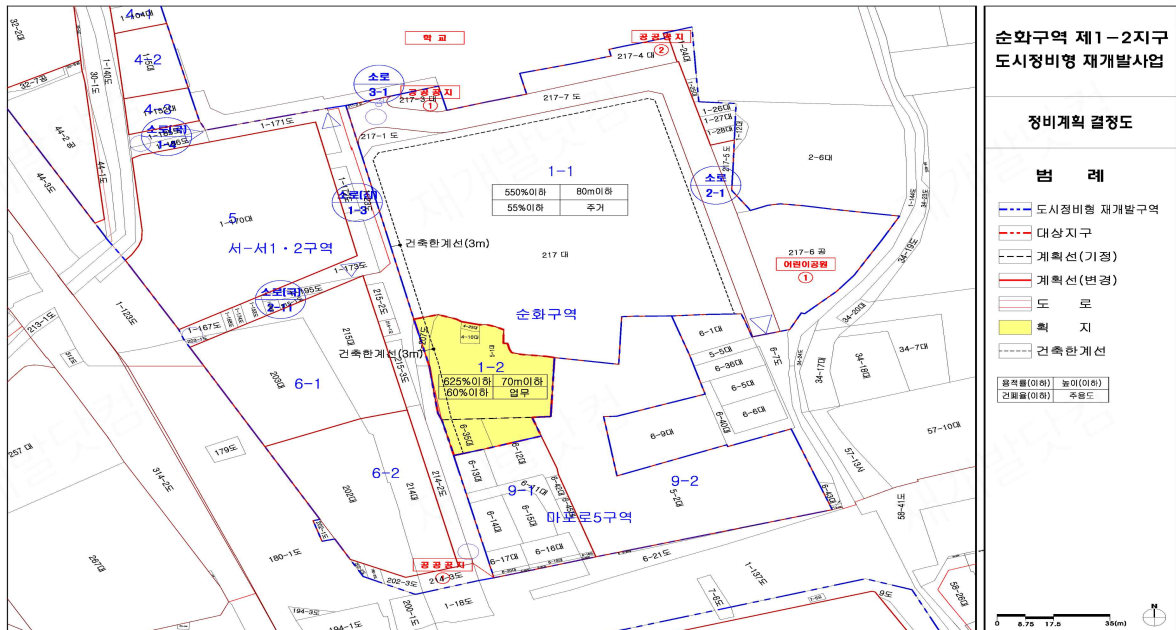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• 건축한계선 : 서소문로9길변 3m
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	• 지정용도 :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[근린생활시설(소매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 등)]
기타사항에 관한 계획	• 대지내 공지 : 이면가로변(서소문로9길) 공개공지 및 대지내 조경 배치

3. 관계도면 : 붙임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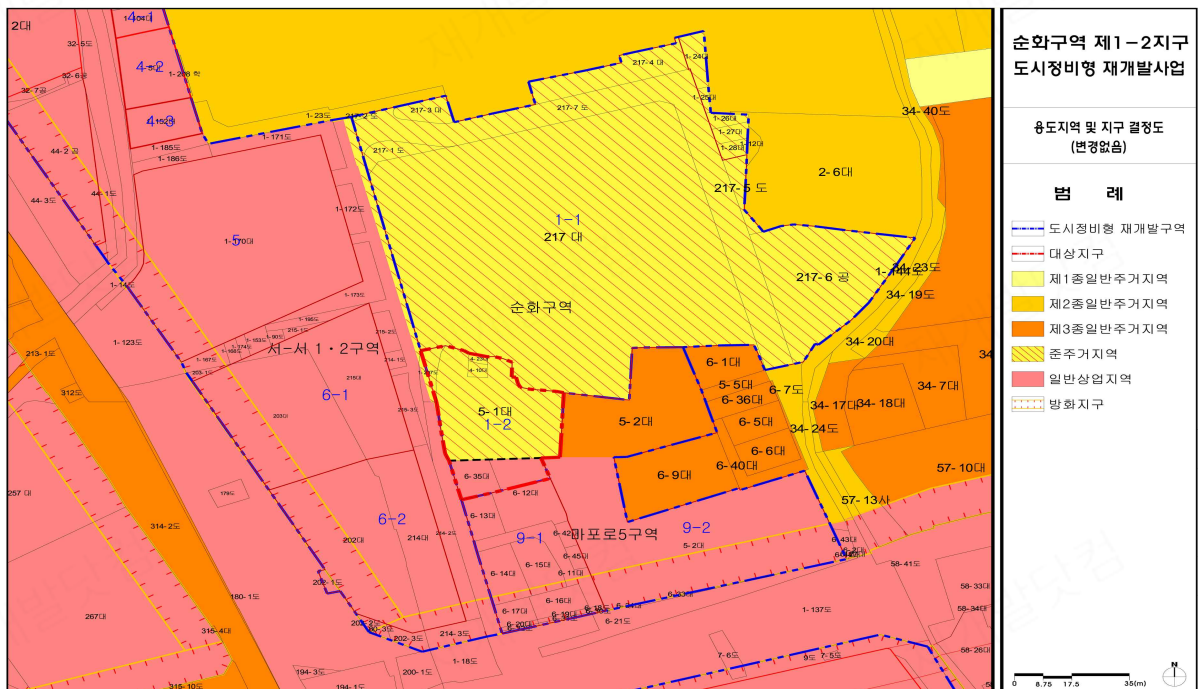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72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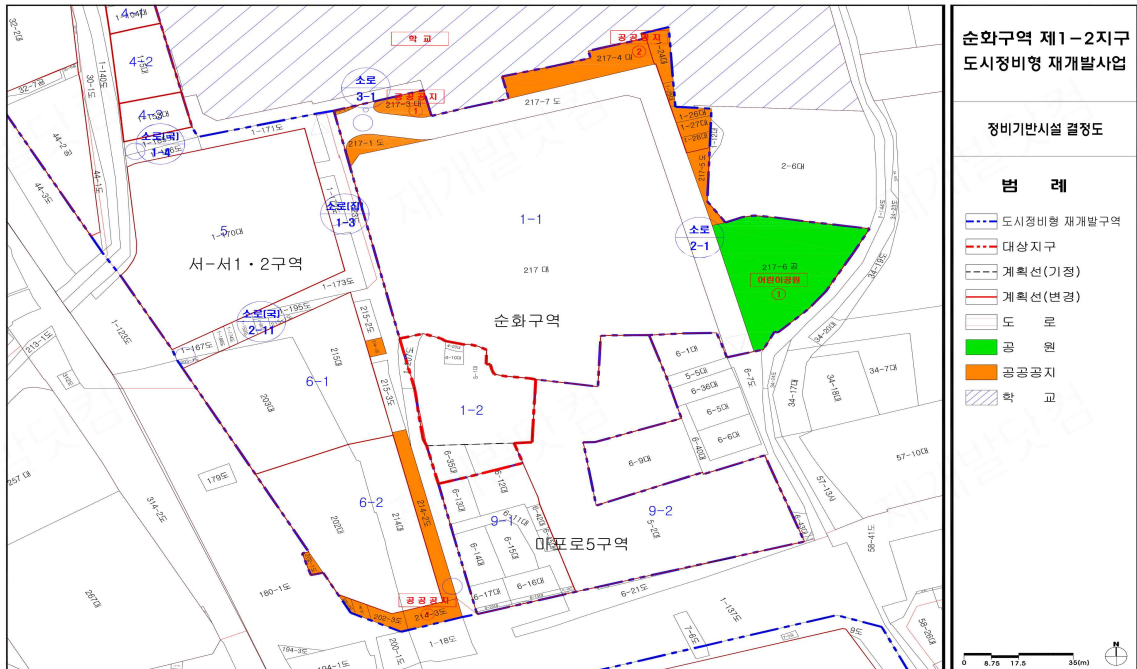
< 정비계획 결정도 (변경없음) >



< 용도지역 및 지구결정도 (변경없음) >



< 정비기반시설 결정도 (변경없음) >



< 정비기반시설부담 결정도 (변경없음) >

